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(안)

검토보고

운영위원회(구의회사무국)

의안번호	제74호
제 출 자	경수현 의원 외 5명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조례(안)
검 토	전문위원 유천곤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에 따라 ‘성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’에서 결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3조(월정수당 지급) 제3항

-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,786,1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(직전연도)을 합산 적용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, 동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2. 11. 10 . ~ 2022. 11. 15.

4. 검토의견

가. 검토내용

- 「지방자치법 제40조¹⁾」에서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해당하는 비용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,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 제2호²⁾에 의거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수, 재정능력,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,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심의결과, 성북구의회 월정수당은 1년차인 2023년은 2022년 공무원보수인상률 1.4%로 인상한 월 2,786,100으로 확정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공무원 인상률만큼 인상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였음.

1) 제40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2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3. 본회의 의결,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
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2) 제33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2.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: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, 재정능력,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,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

나. 종합의견

- 본 조례개정(안)은 「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」에 따라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,
- 검토결과 본조례개정(안)은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.